대학특성화전략위원회규정 3-1-21

규정번호 3-1-21
제정일자 2016.4.26
최근개정 2026.7.20
개정차수 5차 개정
관리부서 기획평가팀

[규정명칭 변경 2026.7.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학사 및 행정 구조의 합리적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학특성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2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 특성화 전략 수집·조정 관련 분석 및 실행방안(개정 2026.7.20.)
2. 학사구조(정원 조정 등) 및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분석 및 실행방안(개정 2026.7.20.)
3. 특성화 분야 교육과정 혁신 및 산학 연계 교육모델 개발(개정 2026.7.20.)
4. 학사제도 개선 및 교육환경 고도화(개정 2026.7.20.)
5. 학생 진로·취업 지원체계 구축·운영(신설 2026.7.20.)
6. 특성화 추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체계 방안(신설 2026.7.20.)
7. 추진단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6.7.20.)
8. 기타 특서와 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신설 2026.7.20.)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산학협력처장, 사무처장, 학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8.08.27., 2018.12.10., 2026.7.2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4.7.24.)

③ 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08.27., 2026.7.20.)

④ <삭제(2026.7.20.)>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추진단) ① 추진단의 단장은 총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 중에서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08.27.)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18.08.27.)

1. 대학 특성화 전략 수립·조정 관련 분석 및 실행 방안 도출(개정 2026.7.20.)
2. 학사구조(정원 조정 등) 및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분석 및 실행 방안 도출(개정 2026.7.20.)
3. 특성화 추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방안 도출(개정 2026.7.20.)

4. <삭제(2026.7.20.)>

5. 기타 대학 특성화 전략 추진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6.7.20.)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7조(업무관리 및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업무부서 팀장이 간사로 한다. (개정 2018.08.27., 2026.7.20.)

제8조(예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에 운영 중인 미래발전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제2항)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1조, 제2조, 제2조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5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 제7조)